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I.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170호
- 나. 발 의 자 : 김용석 의원 외 9명
- 다. 발의일자 : 2016. 5. 2.
- 라. 회부일자 : 2016. 5. 4.

II.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받아 서울교육행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에게 교육 공무원에 준하는 엄격한 도덕 기준(미성년 상대 성범죄자나 성적조작 등으로 인한 해임 전력자 등의 공직 배제)을 적용함으로써 서울교육에 대한 신뢰를 높여 서울교육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III. 주요내용

- 가. 교육감의 위원 위촉 제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나.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함(안 제7조).

IV.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교육공무원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첨).

다. 기 타 :

○ 입법예고 : 의견 없음(2016. 5. 12~2016. 5. 18).

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조례안은 2016년 5월 2일 김용석 의원 외 9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1170호로 발의되어 2016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정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려는 자의 자격요건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고 위원의 해촉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면에서의 검토

- 현재 교육청의 정책자문위원회는 총 26개가 있으며(교육지원청별 자문위원회 포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교사, 교수, 학부모 및 각각의 교육적 사안에 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붙임참고)1).
-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은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 하여금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에2)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

1) 현재 교육시설정책자문위원회 및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와 사학정책자문위원회는 구성 중에 있음.

2)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촉하지 않도록 위원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현행 조례보다 구체화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및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그리고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먼저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이 규정한 위촉 제한의 근거법인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는 교육공무원의 채용제한 및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위사실이 있거나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이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동 개정조례안이 교육공무원에 적용되는 자격요건을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에게 적용하려는 취지는 위원회 구성시 공공의식이 미흡한 인사를 교육정책 자문에서 배제함으로써 서울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7조에서는 해촉 사유를 구체화함으로써 안일한 위원회 운영을 지양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자문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서울교육의 청렴성 강화 노력을 대외적으로 천명하고 행정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나. 법리적 측면에서의 검토

- 먼저 안 제4조제3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에³⁾ 따라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그 구성에 관해서는 조례로 위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문위원회의 위원 자격요건 등과 같은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바, 위촉위원의 자격요건을 공무원에 준하도록 엄격히 하더라도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 하겠습니다.

- 다만, 행정의 공공성 신장과 신뢰성 보장이라는 공익 실현 측면이 크다고 하더라도 동 개정조례안의 정책자문위원회가 법령상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위원회도 아니고, 위원회의 결정 또한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집행권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점,

정부기관의 「정책자문위원회규정」(대통령령) 및 「교육부 정책자문위원회 규정」(교육부훈령)에서도 이러한 엄격한 자격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 등에서 자문위원회의 위촉위원 자격요건 강화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음으로 안 제7조는 해촉 사유를 구체화한 것으로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의 실효성 보장을 통한 자문기능의 실질화를 꾀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 타당성 측면에서의 검토

1) 안 제4조제3항

○ 안 제4조제3항과 관련하여 자문위원의 자격요건으로 교육공무원 채용요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의 경우, 자문위원 위촉시 범죄이력 조회 등 신원조사가 수반되어 민간위원 위촉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수집·활용한다는 비판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하고자 하는 개정취지의 타당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개정안을 적용하여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26개 자문위원회 446명의 범죄경력(성범죄경력 포함) 조회를 경찰서에 요청해야 하고, 그에 따라 자문위원에게 ‘개인정보동의’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위원의 자발적인 참여가 위촉될 염려가 있고 추가적인 행정부담도 있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⁴⁾

그러나 동 개정조례안의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시 공공성 강화와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바,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2) 안 제7조

○ 안 제7조는 현재 제1호~제2호로 구성되어있는 위원의 해촉 사유를 제1호에서 제4호까지로 보다 세분화 한 것으로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국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

4)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4784(2016.05.12.)

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교육청은⁵⁾ 현행 조례 제7조제1호가 삭제됨으로써 자문위원이 위촉 후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⁶⁾ 해당되어도 해촉시킬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게 되므로 현 조례 제7조제1호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제1호에 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 개정조례안 제4조제3항의 자문위원 자격요건에 이미 포함되어 자문위원 구성시 원천적으로 배제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서울시교육청은 동 개정조례안 제7조 각호와 관련하여 자문위원회 활동이 연2회 정도임을 감안할 때 현행 조례 제7조제2호에 명시된 규정만으로 동 개정조례안의 제7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를 포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 제7조제2호의 경우 동 개정조례안 제7조1호~제3호의 사항을 포괄하지 못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제4호와 동일한 것으

5)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안전기획관-4784(2016.05.12.)

6)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로 판단되는 바,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끝으로

○ 동 개정조례안은 그 취지와 내용면에서 상위법령에 위배하지 않고 조례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회 구성시 위원회 운영의 공공성과 신뢰성 증진 못지않게 위원회 운영상의 행정편의 역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붙임]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현황

| 연번 | 위원회명 | 소관부서 | 위원수 (단위 : 명) | | | 현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연월일 | 2013~2015년 3년간 평균 회의개최수 | 비고 (최초 설치년도) |
|----|------------------|----------|--------------|-----|-----|-----------------------|-------------------------------|-----------------|
| | | | 당연직 | 위촉직 | | | | |
| | | | | 민간 | 비민간 | | | |
| 1 |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 정책·안전기획관 | 0 | 21 | 0 | 2016.1.27. | 1.33 | 2011 |
| 2 | 학부모지원 정책자문위원회 | 참여협력담당관 | 0 | 15 | 0 | 2016.1.1. | 0.67 | 2011 |
| 3 | 교육복지 정책자문위원회 | 참여협력담당관 | 0 | 11 | 4 | 2016.2.23. | 0.33 | 2011 |
| 4 | 과학교육자문위원회 | 교육혁신과 | 0 | 8 | 7 | 2015.6.1. | 0.67 | 2011 |
| 5 | 환경·생태교육 자문위원회 | 교육혁신과 | 0 | 9 | 6 | 2015.12.1. | 0.33 | 2011 |
| 6 | 문화예술교육 자문위원회 | 교육혁신과 | 0 | 11 | 4 | 2015.11.24. | 0.33 | 2011 |
| 7 | 사교육정책자문위원회 | 초등교육과 | 0 | 4 | 10 | 2015.10.14. | 2.00 | 2011 |
| 8 | 학습부진대책 자문위원회 | 초등교육과 | 0 | 6 | 8 | 2015.11.20. | 1.33 | 2011 |
| 9 | 외국어교육 정책자문위원회 | 중등교육과 | 0 | 1 | 11 | 2015.12.1. | 0.67 | 2011 |
| 10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 민주시민교육과 | 0 | 8 | 7 | 2015.6.30. | 1.00 | 2011 |
| 11 | 도서관정책자문위원회 | 평생교육과 | 0 | 10 | 5 | 2015.9.1. | 1.33 | 2011 |
| 12 | 진로·직업교육 자문위원회 | 진로직업교육과 | 0 | 12 | 3 | 2015.12.1. | 0.67 | 2011 |
| 13 | 사학정책자문위원회 | 학교지원과 | | | | 구성중 | 0.67 | 2011 |
| 14 | 학교신설이전자문위원회 | 학교지원과 | | | | 구성중 | 0.00 | 2011 |
| 15 | 교육시설 정책자문위원회 | 교육시설안전과 | | | | 2기 구성중 | 0.00 | 2011 |

관계 법령

교육공무원법

[시행 2016.1.27.] [법률 제13819호, 2016.1.27., 일부개정]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삭제 <2012.1.26.>
2. 금품수수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3.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5.6.4.] [법률 제12738호, 2014.6.3., 타법개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